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안 제23조제1항), 제대군인 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안 제23조제2항)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연평해전 등에 참여한 제대군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보훈병원 진료비”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법률구조 지원 절차)”를 “(법률구조 지원 대상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다음 각 목의 전투와 사건에 참여한 사람
 - 가.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 나.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 다.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 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 마.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전투와 사건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투와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전의 제

3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신 설>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u>보훈병원 진료비</u> 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진료비</u> -----.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⑤ 제4항----- ----- ----- ----- -----.

⑤ · ⑥ (생략)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신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제대군
인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다음 각 목
의 전투와 사건에 참여한 사람

가.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나.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다. 대청해전(2009년 11월 10
일)

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마.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
월 23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
하는 전투와 사건으로서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
투와 사건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
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
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장
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
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
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
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라 한다)-----
-----.

③ 제2항-----
----- 중·장기
복무제대군인 등-----
-----.

④ ----- 제3항-----

-- 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
제2항제2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5693 (044) 202 - 5731